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우151-802 서울시 권역구 남현동 1056-17 / 전화 (02) 2182-0742 / FAX (02) 581-1894 / 담당 : 현종빈

문서번호 : 전력협(민원) 제08 - 524호

시행일자 : 2008. 06. 11

수 신 : (주)인하전기안전 대표이사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	결재	
	시간			
	번호		공람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귀사의 문의(2008.06.09)와 관련입니다.
2.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4. 귀사에서 질의하신 주상복합 현장이 동일소유의 전기설비가 동일 사업장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전기설비의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시공자를 점유자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기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2개 이상의 전기설비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다만, 전기공사의 하수급인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수급하여 원수급인의 지도·조정을 받으므로 전기설비의 점유자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한국전력기술인협회

